

국민안심해안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

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,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,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「국민안심해안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」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21일
강릉시장

1. 용역사업 집행계획

- 가. 용역명 : 국민안심해안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
- 나. 시행기관 : 강릉시 해양수산과
- 다. 사업주요내용 : 과업이행요청서 참조
- 라. **용역예정금액 : 금507,211,000원(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)**
- 마.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365일(12개월)
- 바. 입찰예정시기 :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
 - ※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,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. 입찰 및 계약방법

- 가.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.
- 나. 적격심사기준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이 적용됩니다.

3. 입찰참가자격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
- 나.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44조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**건설기술용역업(종합) 또는 건설기술용역업(설계·사업관리-일반) 또는 건설기술용역업(설계·사업관리-설계등용역-일반)**을 등록한 업체
- 다.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**건설부문의 “항만·해안, 토질·지질, 토목구조, 조경, 도시계획”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**
- 라. **측량분야** 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4조 규정에 의한 **측량업(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)**으로 등록한 업체
- 마. 측량 분야는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**직접생산확인증명서**를 소지한 업체
 - 측량(세부품명) : **측량용역(8115160401)**
 - ※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,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
- 사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이하 지방계약법), 건설기술진흥법(이하 건기법)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3. 공동도급

- 가. 상기 입찰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**단독 또는 공동도급**(공동이행, 분담이행, 혼합방식)으로 참여가 가능하며, **본 용역 측량 분야는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**으로 한다. 대표사(출자비율이 큰 업체) 포함 5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,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%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나.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」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.

다.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,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.

라.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평가와 관련된 비율은 아래표의 적용비율을 적용합니다.

※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및 PQ평가 적용비율

구 분	합 계	엔지니어링부문	측량
비율(%)	100%	84.5%	15.5%

※ 상가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도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하기 위함이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음(분담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)

※ 측량, 조정, 도시계획 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하나,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

마.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계약 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중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.

지역업체 참여비율	30% 이상	30% 미만 20% 이상
점 수	3점	1점

바. 지역업체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「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 의거 도내 업체의 참여비율을 49% 이상 권장합니다.

사.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르며,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4.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

가.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 (<http://www.g2b.go.kr>) ⇒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

나.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(대리인)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다. **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: 2026. 8. 3.(월) 10:00~17:00**

라. **제출방법 : 직접제출**(우편, 팩스, 컵서비스 등 불가)

마. 제출서류 :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

※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(회사대표 공문 포함)
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-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.
- 사용인감신고서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.
-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
- 공동수급협정서(공동도급시) 원본 1부.
-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(원본 1부, 사본 1부).
-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5부(업체명 미기재)
-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전산자료(USB) 1EA.

※ 자기평가서, 업무중복도, 공동수급협정서 자료는 전산자료(USB)와 함께 별도 제출

바. **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: 강릉시 해양수산과 어촌신활력팀(14층)**
(☎033-640-5377)

5.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

가.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.

나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5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「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에 의거 평가하며,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점수(90점) 이상인 업체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합니다.

※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를 다시 시행한다.

다.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,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,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라. 가격 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, 입찰참가 등록일시, 입찰일시,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.

마.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.

6. 낙찰자 결정 방법

- 가. 적격심사기준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 제2장의2 기술·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(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.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)에 따라 **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**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- 나.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‘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’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(1점)를 부여합니다.
- 다.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,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 한도(2점)를 부여합니다.
- 라.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환산점수를 적용합니다.

7. 기타사항

- 가.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,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.
- 나. 안내서 교부 및 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(재직증명서, 신분증 첨부)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장 및 다음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다.
-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
 - 사업수행능력 평가서
 - 사업자등록증 및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
 - 사용인감신고서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
- 다.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,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(서식순)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라.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,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,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.
- 마.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,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, 용역입찰유의서, 용역계약일반조건,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

입찰에 필요한 (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)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
- 바.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,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, 평가항목 중 “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”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- 사.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아.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, 공동도급사(참여회사)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.
- 자.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,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. (단,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)
- 차.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.
- 카. 용역비,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타. **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제출**하여야 하며, 질의서 발송 시 **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확인(☎ 033-640-5377)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, 그 이외의 질의(전화 문의 등)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.
- *질의서 접수기간: **2026. 7. 27.까지** 전자우편 접수(akami1101@korea.kr)
 - *질의 회신일: **2026. 7. 28.**
- 파.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: 강릉시 회계과(☎033-640-5161)